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및 하도급저가심사제 전면 시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없으면 「직불」해야 하고,
저가 낙찰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落札率 不問하고 88% 미만 하도급 「저가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된 적격심사요령 등 총 25건의 회계예규를 비롯해 고시·통첩 등을 신설·정비했다.

이번 신설·정비된 내용은 하도급저가심사제 전면 시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법령에 못지 않은 주요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음 내용은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회계예규 등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全文은 다음 8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비 보상요령(신설)

① 대상공사: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해 시공되는 공사

② 보상비 수령자: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 이내)

③ 보상비 지급기준: 보상비로 책정된(총공사비의 1% 수준) 3분의 1을 균등배분한다. 2인 이내일 경우에도 각자 3분의 1씩 배분한다.

■ 내역입찰제 대상금액 등을 고시

① 내역입찰제 대상공사: 55억원 이상(시장개방규모)

②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물품: 1억5천만원 이상(시장개방규모)

■ 복수예비가격제 운용지침 개선(통첩)

① 종전: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5개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2개를 추천하여 평균했었다.

② 개선: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0개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3개를 추천하여 평균하도록 했다.

■ 손해보험가입 강화(신설)

① 종전: 임의가입이었으나

② 개선: 지하철과 교량 등 22개의 PQ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범위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며 보험료는 발주관서가 부담(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했다.

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인 PQ공사는 부대입찰 의무공사이기도 하다. (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참조)

회계예규·고시 및 통첩 주요내용

■ 적격심사요령(신설)

① 심사대상 : 일반건설공사는 1백억원 이상, 전기·전기통신공사는 55억원 이상.

② 심사기준 : 심사항목과 배점은 당해공사 수행능력 70%, 입찰가격 30%, PQ대상심사 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하고 PQ(사전심사)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은 1%포인트에 1점씩 감점한다. 턴키공사는 발주관서가 30점 한도내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의 마련한다.

④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종합평점을 70점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그 시설물이 손괴되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입찰자는 감점(40점)하여 사실상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도록 한다.

심사기준은 재경경제원장관이 정하고 발주관서의 장은 동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물품 및 용역은 공사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제정한다.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1] 일반공사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 | 100 |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 70 | |
| |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 항목을 이용 | (35) | -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기술능력평가 제외 가능) |
| | -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 - 현장관리조직 - 현장대리인의 자격 - 품질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 | (13) | |
| | -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 - 공정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하도급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10) | |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 -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 입찰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 (12) ± 2 | |
| 입찰가격 | | | 30 | 평점산식 : 아래 |
|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 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 △ 40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및 하도급저가심사제 전면 시행

| | | |
|--|---|--|
| | 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text{평점(점)} = 30 - \left| \left(\frac{88}{1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은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일괄입찰 공사 등

|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 | 100 |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 항목을 이용 | (30) | -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으로 평가 |
| | | -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평가 | | - 현장관리조직 - 현장대리인의 자격 - 품질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 | (35) | |
| 입찰가격 | | | 30 | 평점산식은 발주관서가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작성·운용 |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당해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 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 △ 40 | |
| | |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0 | |

■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강화

① 종전: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했다. (구체적인 사항 불명시)

② 개선: PQ대상공사는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종합평점 60점 이상)되도록 했으며, PQ대상외의 공사는 도급한도액과 실적 등 원도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이는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연대보증인도 원도급자에게 갖추도록 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조치다.

■ 하도급심사의 강화

① 종전: 계약상대자의 낙찰율이 85%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내용을 심사했었다.

② 개선: 계약상대자의 낙찰율에 관계없이 하도

급계약금액이 88% 미만인 때에는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낙찰율이 높을 경우 하도급 비율이 낮아도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낙찰율에 관계없이 88% 미만으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요건 확대

① 종전 : 하도급대금지급 확정 판결,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85% 미만 금액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하도록 했다.

②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은 종전과 같으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의 경우도 포함했다. 「예정가격의 85% 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를 「예정가격의 88% 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로 3% 인상했다. 이와함께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권서는 하수급자 보호상 필요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추가했다.

이는 하수급자의 보호육성을 통해 건설한 시공을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사전심사(PQ)신청시 자격제한

① 종전 :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제한군)에 의거 제한할 수 있었다.

② 개선 : 길이 1백m이상의 교량공사와 공항건설공사를 포함한 12개의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군에 구애받지 않고 발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12개 공사에는 댐축조·철도·지하철·터널공사가 포함

된 공사·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상수도(정수장을 포함)·관람집회시설이 포함된다.

이는 다중의 안전과 관계깊은 공사의 경우 실적 등이 미비한 업체가 제한기준에 따라 참여하게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적격자선정 범위 조정

① 종전 : 세무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일수는 5일 이내였고,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자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 이상 30인의 범위 안에서 적격자를 선정했었다.

② 개선 : 세무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했으며, 적격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20인 이상 30인의 범위 안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전심사기준 배점조정

① 종전 : 신인도 ± 10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체 평균재해율 기준 ± 3 , 3년 동안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해당자 -3이었던 것을

② 개선 : 신인도 ± 20 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체 평균재해율기준은 ± 5 , 3년 동안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0,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해당자는 -2로 조정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준안전 관리비 사용 의무 위반자 -3」을 신설, 추가했다.

■ 과다제한금지

① 종전 : (추가)

② 개선 : 입찰공고시 「일부 구성원 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공동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공동도

급계약운용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회계통첩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방법 개선

① 종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었다.

② 개선 : 실적제한의 경우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이 없는 자는 대표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대표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 대규모 기업집단간 공동도급제한

① 종전 : (추가)

② 개선 : 지역의 무공동도급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소속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서울의 대기업을 지방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도급함으로써 공동도급 본래의 의의가 상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기업을 각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적을 쌓기 위해 담합하여 공동도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구성원의 중도탈퇴시 책임구분 명확화

① 종전 :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이 자격을 구비한 경우 우선 시공할 책임이 있었다.

② 개선 : 중도탈퇴한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1차로 당해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보증 시공하도록 했다.

이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내역입찰대상 조정

① 종전 : 「총액단가 입찰 집행요령」으로 칭하고 있었으며, 내역입찰대상은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 하고 있었다.

② 개선 : 「총액단가 입찰 집행요령」을 「내역입찰 집행요령」으로 예규 명칭을 변경했다. 추정가격이 55억원 이상인 공사(토목, 건축, 전문공사, 전기, 전기통신공사 등)는 모두 내역입찰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55억원 미만 공사는 모두 총액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 내역입찰 산출내역서양식 조정

① 종전 : 총괄집계표, 산출내역서 등 2종이었다.

② 개선 : 총괄집계표 작성을 폐지하고 산출내역서 제출시 동내역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했다. 준공후 1년 동안 동내역서의 부분의 보관을 의무화 했다.

■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종전에 「3년 이상」법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던 내용을 「1년 이상」법인으로 개선했다.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① 종전 : 제1차의 낙찰율이 「8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제한적최저가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② 개선 :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제한기간 상향 조정에 따라 「85%」를 「88%」로 조정했다.

■ 선금지급요령

① 종전 :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선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 이상」이 경과될 경우에 지급했었다.

② 개선 : 「낙찰율과 관계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하도록 했다.